
글 나오는 순서

<발제1> [장애차별시정관련 국가인권위 현황]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조사 업무	1
2. 장애개념의 정의	2
3. 차별의 이해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2
4. 장애차별의 특정보완책	4
5.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5
6. 장애차별조사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6
□ 참고자료 1. 장애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7
2. 장애차별시정관련 NAP권고안	8
3. 장애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현황	13

<발제2>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김상훈(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1. 장애인관련 입법의 근거	17
2.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보완장치 I (각론적 검토)	19
3.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보완장치II(총론적 대안)	21
□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25

〈사례 1〉 [장애인을 이동하게 하라]

김용목(광주장애인가동철폐연대 공동대표)

1. 일등광주와 복지광주	59
2. 이동의 권리	60
3. 장애인과 대중교통수단	61
4.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64
5. we will ride	65
6.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	67

〈사례 2〉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정순임(광주장애인가동철폐연대 상임대표)

1. 시작하는 말	69
2. 광주지역 장애학생 현황	70
3. 장애인 교육차별 현황	70
4. 장애인 교육 지원법	71
5.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일지	74
6. 광주 장애인교육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장애인가동철폐연대’의 합의문	76
7. 2006년 광주지역 초등특수학교·학급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운영계획안	79

〈사례 3〉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방안에 대하여]

주숙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1. 자립생활의 개념	85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87
3. 지역사회 자립생활 현실화 요건	89
4.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방안	90

□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안	9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20

장애차별시정관련 국가인권위 현황

(2006. 6. 19)

발제원고 작성자
장애차별팀 김익현

< 발 제 순 서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조사 업무
2. 장애개념의 정의
3. 차별의 이해
4. 장애차별의 특징
5.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6. 장애차별조사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 발제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조사 업무 근거

- 조사범위 및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4호 제7호, 제19조(업무)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조사의 절차와 방법
 - 제36조(조사의 방법)
 - 의사결정(심의, 자문, 조정)
차별시정위원회법, 장애차별전문위원회(법 제12조)
장애차별조정위원회(법 제41조)
- 사건에 대한 처리
 - 제32조(각하) 제33조(이송)
 - 제39조 (기각)
 - 제40조(합의), 제41~43조(조정)
 - 제44~45조, 48조 (구제조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2. 장애개념의 정의

○ 장애의 개념

“누가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정의하는가?”

또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정의되어 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인구통계학 조사를 위한 정의
- 서비스 대상을 위한 정의
- 소득 지원을 위한 정의
- 장애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정의
-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운동계에서 쓰여지는 정의

○ 장애의 정의

- 유엔장애인권리선언 제1조(1975년)
 -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하게 도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신체기능 장애, 내부적 기관의 장애 등)과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이라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7호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3. 차별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의 차별행위 정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19가지 차별사유)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 교육 훈련이나 이러한 시설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의 발생부문

- 고용관련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 재화용역관련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교육시설이나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 일반적 차별의 정의

- 기본적으로 차별이란 평등한 지위에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개인 또는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주체는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도출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됨. 그 수단은 상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자격 또는 조건을 수반하게 됨. 그 주체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과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이 그러한 자격 또는 조건에서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과 집단을 의도적으로 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이유의 차별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합목적적인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 자의적 기준인지? 여부를 같이 판단해야 함

○ 차별의 형태

- 직접차별 : 특정한 사안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집단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
ex :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를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 : 장애인을 고용하였지만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배치하는 경우

○ 차별의 예외

특정 조건에 미달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Ex : 특정 기능이 필수적인 직업에서 당해 기능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을 채용하는 것

Ex : 소방대원처럼 진화작업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지원

가능한 경우

○ 차별판단의 곤란성

평등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불평등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연결되어 심사기준이 자유권과 다르고 추상적일 수 있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은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나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거기에 벗어나는 것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법으로부터 출발하였음

최근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법심사와 이에 따른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및 지침’ 작성이 필요한 이유

4. 장애차별의 특징

○ 장애차별의 이해

- 장애차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구조 속에 소외될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간접차별로 인한 피해가 많음.

- 간접차별은 대부분 문서와 되지 않은 규칙이나 관행상의 조건이 많고 이에 대한 합리성 판단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많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상존함

○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

- 고용 관련 : 업무의 재구성, 일정의 변경, 지원장비의 확보 또는 변경, 대독인과 수화통역사 제공 등

- 교육 관련 :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설의 개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의 연장, 다양한 수업기자재의 배치 등

- 차별시정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적극적인 우대조치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자(예를들어, 고객, 동료, 해당 근로자의 자신)의 사생활 및 안전의 보호와 (국가의 의무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과 단체의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가 고려대상이 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6. 3월말현재)

- 차별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및 처리 현황
 - 위원회 전반적인 진정사건접수의 감소현상
 - 2005년 한해 1,125건 접수/ 2006년 3월말 150건 접수(6월현재 291건)
- 장애 및 병력 관련 차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건수 : 처리건수 = 250건 : 213건(85%처리) 처리중 (15%)
 - 인용/ 합의종결/ 조정/ 기각 또는 각하중 조사중해결
68건(총처리건수중 32%)
 - 기각/ 각하 / 이송 145건(총 처리건수중 68%)
 - ※ 기각 또는 각하중 조사중 해결 41건(총 처리건수중 약 20%)
- 장애차별 영역별 접수 및 처리 현황
 - 고용관련 86건 (34%)
 - 재화 · 용역(시설이용 포함) 관련 127건 (51%)
 - 교육시설 이용 등 관련 21건 (9%)
 - 기타 16건 (6%)
- 장애 종류별 접수 현황
 - 지체장애 (31%)
 - 시청각 장애 (26%)
 - 뇌병변장애 (4%)
 - 내부기관장애 (1%)
 - 정신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8%)
 - 색맹 · 색약 등 기타장애(30%)
 - ※ 붙임자료1. 참조 : 장애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6. 3월말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관련 업무추진방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한 모니터링
: 장애인차별시정,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 접근권, 건강 · 생활권 보장관련
 - ※ 붙임자료2. 참조 국가인권정책기본기본계획권고안(요약표)
 - 2006년도 장애차별팀 주요인권현안 검토과제 현황
 - 장애인보조건
 - 장애인투표권보장관련
 - 증증복합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용역실태조사 병행)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 공공사업에 있어 장애인 참여
 - TV방송에서 농아인 교육권 및 정보접근권 확보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모성권 보호 중심)
-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교육 개선
- 지역사회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용역사업병행)
- 장애차별시정관련 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 붙임자료3. 참조 : 장애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현황

6. 장애차별조사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 진정사건의 감소현상과 사건처리 지연 등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에 대한 위원회 사무처의 전반적인 사건처리 지연 및 인권상담센터의 각하사안에 대한 예비조사 강화
 -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신뢰 회복
- 합의와 조정에 의한 해결방안의 적극적 모색
 - 장애차별의 특수성과 차별판단의 한계를 상호이해하고 합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방법 모색
 - 모범적인 합의 및 조정사례들에 대한 홍보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들의 선택과 집중
 - 접수되는 진정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과제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기획조사과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단체 담당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장애차별팀간의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 참고자료 1. 장애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6. 3월말 기준) 1부.
 2. 장애차별시정관련 NAP권고안(요약표) 1부.
 3. 장애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현황 1부. 끝.

<붙임1> 장애 및 병력 관련 진정사건 통계자료 (2001. 11~2006. 3. 31)

1. 차별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병력	학력	기타	성희롱	
접수	계	2,199	137	36	250	190	536	39	76	1	57	23	25	23	3	2	16	44	13	67	96	483	82
	구성비(%)	100	6.2	1.6	11.4	8.6	24.5	1.8	3.5	0.1	2.6	1.0	1.1	1.0	0.1	0.1	0.7	2.0	0.6	3.0	4.4	22.0	3.7
	2006년(1/4분기)	150	2	6	24	21	39	2	8			1					2	1	13	5	13	13	
종결	1,827	119	28	213	154	421	35	64	1	46	21	23	18	1	2	13	40	12	55	66	434	61	
조사중	372	18	8	37	36	115	4	12	0	11	2	2	5	2	0	3	4	1	12	30	49	21	

2. 장애 및 병력 관련 차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유형										조사 진행중
		소계	인용 (권고)	합의 종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일반 종결	조사중 해결	일반 종결	조사중 해결			
사건수 (비율%)	317	268 (100)	20 (7.5)	7 (2.6)	2 (0.7)	35 (13.0)	5 (1.9)	154 (56.3)	44 (17.5)	1 (0.4)	-	49
장애	250	213 (100)	19 (8.9)	6 (2.8)	2 (0.9)	24 (11.3)	3 (1.4)	120 (54.9)	38 (19.2)	1 (0.5)	-	37
병력	67	55 (100)	1 (1.8)	1 (1.8)		11 (20.0)	2 (3.6)	34 (61.8)	6 (11.0)	-	-	12

※ 2002년 통계는 2001.11.26.~12.31. 접수된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 인용(권고) :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인권교육 등 권고, 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3. 장애차별 영역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교육	퇴직	정년	재화	용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장애	접수(건)	250	41	10	19	3		10	1	1	1		58	33	16	13	2	5	21		16
	구성비(%)	100	16.4	4.0	7.6	1.2		4.0	0.4	0.4	0.4		23.2	13.2	6.4	5.2	0.8	2.0	8.4		6.4
	종결(건)	213	36	8	15	3		9	1	1	1		52	28	38	11	1	4	17		14
	조사중(건)	37	5	2	4			1					6	5	4	2	1	1	4		2

4 장애 종류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내부기관 장애	색맹·색약	기타 장애	미분류 (일반)
합계	250	77	10	40	26	4	17	3	21	8	44
구성비(%)	100	30.8	4.0	16.0	10.4	1.6	6.8	1.2	8.4	3.2	17.6

[붙임2] 장애차별시정관련 NAP 권고안 과제(요약표)

■ 장애차별팀

구 분	현황 및 필요성	핵심추진과제
<장애인>		
1.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장의 편의시설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고려 부족, 점자투표용지 부재, 정신지체장애인의 선거권 무시, 선거시 피선거권자 연설의 수화통역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한됨. ○ 수사·재판과정에서 자기 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이 변호사, 대리인, 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 ○ 정신장애인 시설물 출입제한 문제와 장애인의 면허취득과 업무수행이 제한됨. ○ 장애인 관련 법률이 차별금지 보장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미비함. ○ 장애인의 시설입소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설운영에 시설장애인과 보호자 참여가 배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 ○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 투표권 행사 홍보 강화, 선거용 보조기구(점자용 투표용지 등)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 장애인 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 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개선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조기교육이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애아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가중됨. ○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이동권 및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마련 ○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적극적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실무형 직무연수와 특수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달연수 등 다양한 연수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

구 분	현황 및 필요성	핵심추진과제
3.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법에서 고용에서의 차별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 실효성이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장애인 노동자의 욕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적절한 직업배치로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만족도가 낮음. ○ 장애인 창업 지원의 예산집행을 저조, 창업정보와 지식제공 부족, 우선허가제도에 의거해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 및 자판기의 수적·지리적 제약성 등으로 장애인 창업지원의 실효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장애인 고용에서 차별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세계갑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 ○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4.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미비하여 주거와 근린생활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간의 연계성이 미비하고 편의시설 설치 주체가 불명확함. ○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어렵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간 연계성 확보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과거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확대,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대중교통 운송체계를 개선
5.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과 인적자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재활시설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움. ○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회가 박탈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하고 재활해야 하므로 의료부문의 복지혜택이 절실한데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급여수준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 ○ 장애인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 크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이 지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의 관련 조항(제732조)을 개정하고, 민간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선하고, 재해발생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체육권 증진

구 분	현황 및 필요성	핵심추진과제
<장애아동>		
1.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p>○ 기초생활보장의 자산기준과 부양의 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실상 수급을 받아야 할 가구인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p> <p>○ 장애인의 경우 가구 특성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결식아동을 정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식아동의 수와 실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 이들의 복지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p> <p>○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생식보건상담 및 서비스가 요청됨.</p>	<p>○ 빈곤아동의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p> <p>○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p> <p>○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생식보건교육 프로그램 실시</p>
2. 보육·교육 혜택 확대	<p>○ 최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수혜율이 크게 증진되고,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율도 97% 이상으로 아동의 발달권이 잘 보장되는 것처럼 보임.</p> <p>○ 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업료만 면제되고 기타 교육에 필요한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활동비 등의 납부금은 학생의 부담으로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학습권이 크게 훼손됨.</p> <p>○ 따라서 취학율과 같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학교교육을 정착시켜야 함.</p>	<p>○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유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서비스 지원을 강화</p> <p>○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기초학력 부진 대책을 강화</p> <p>○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 등 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 시스템 구축</p> <p>○ 장애유형별 특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 확충하며,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을 마련해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p> <p>○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p> <p>○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입시정책 수립</p> <p>○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가출 청소년의 상황에 적절한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쉼터 다양화</p>

구 분	현황 및 필요성	핵심추진과제
<여성장애인>		
<p>1.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으로 취업·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 규정된 육아시설 설치와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는 여성들 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짐. ○ 핵가족화·고령화 시대에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가족간호 지원책이 필요한데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의 가족간호휴직 등 지원책이 부재함. ○ 육아휴직급여가 아직 낮고, 보육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정·한부모가정·저소득 가정 등 취약부모의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정책 마련 ○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행정감독 강화 ○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과 남성의 참여 장려
<p>2. 인권 취약 여성의 권리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여성들은 모성보호정책의 취약지대에 있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 현행의 법·제도·정책도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경시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8)되었으나 이주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성매매특별법 제정(2004.3)에서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수사특례와 지원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많은 근로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노동자, 파견직 등)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영업사원, 학습지 교사 등)이며 이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의 적용을 실제로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중 일부만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평등 정책계획 수립 시 취약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 여성장애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시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도우미 파견 등 지원 ○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일 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를 명시 ○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보호 ○ 취약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를 마련

구 분	현황 및 필요성	핵심추진과제
<장애인 해고 및 최저임금 적용>		
개별적 사관계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한 해고기준으로 인한 분쟁 발생, 경영상 해고시 성·장애·비정규직 여부·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대우 발생 등으로 노동자 보호가 미약함. ○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전제로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임금계층의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제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붙임3>

장애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 의견표명 및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가. 장애차별 관련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01진차1	장애차별 제도정책 시정 및 차별행위 금지권고	2002.04.11 (전원위)	제천시청	수용
2	권고	장애관정시 남녀 차별(2건) -02진차2외 1건	동일한 외모형태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등급을 상위로 정하는 산재법시행령을 개정토록 권고	2002.11.25 (정책위)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수용
3	권고	운전면허발급시장 애인 차별(5건) -01진차45외 4건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시 개인별 특성, 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보완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권고	2003.06.30 (제3소위)	경찰청장	수용
4	의견표명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 개 선 의견표명 -04진차115	선거법에서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법률개정할 것을 권고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이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청각장애선거인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이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나, 방송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이 어렵다면 후보자들이 방송광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것인바, 비장애선거인과 청각장애선거인을 차별하는 것임	2004.10.25 (전원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국회)	검토중
5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04진차53	진정인의 평정과 승진과정에서 누적적으로 가해진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근무성정평정지침 등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4.11.08 (전원위)	부산대학교 총장	수용
6	권고	공무원임용시험시 장애인 배려 (03진기675, 04진차17)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하여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응시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완할 것을 권고	2004.11.22 (제3소위)	중앙인사위 원회	일부 수용 (장기 과제 검토)
7	권고	공직선거관리 규 칙에 관한 제도개 선 권고 -04진기95	점자선거공보의 규격을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격화 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005. 3.28 (전원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국회)	수용
8	권고	색각이상을 이유 로 한 공무원 채 용제한(9건) -04진차207외 8건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2005.06.20 (제3소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일부 수용 (경찰 청만 검토중)
9	권고	결혼정보 회사의 회원가입 관련 장 애인차별 -04진차381	결혼정보회사의 장애인 회원가입거절관련 표준약관 등 개선권고	2005.07.19 (제3소위)	(주)좋은만 남선우대표 이사, (주) 듀오정보 대표이사	수용
		계 9건				

나. 병력차별 관련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	권고	병력을 이유로 한 용역공급이용차별 -04진차355	한센인에 대한 방문정보화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2005. 7. 19	한국정보 문화 진흥원장	수용
		계 1 건				

다. 장애차별 관련 기획조사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	권고	청계천 장애인 시 설 미비 (*진정사건의 제1항에 의거 고)	○청계천변 보도, 규정에 맞게 개 선 ○천변 산책로의 턱, 자연석 등의 개선 ○천변 시발지, 교량 등의 안전시 설 개선 혹은 강화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 경사 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 다리 등 설치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 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 련	2005.08.26	서울 특별시장	일부 수용
		계 1 건				

라. 장애관련 주요 인권침해 사건 (4건)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현황
1	권고	리프트 사고관련 장애인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이동 권 침해 (02진인1402)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관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 고방지대책 강구 등 권고	2002.11.1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 사	일부 수용
2	권고	학교내 장애인 이 동시설 미설치 (03진인26)	학교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조속히 설치, 편의시설 완비전까 지는 장애인에게 전보, 전학 등에 우선권 부여토록 제도개선권고	2003.05.21	광주시교육 감 광주금구중 학교	수용
3	합의 종결	위법수사 (03진인6561)	3급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과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점 사과하고 합의종결	2004.05.10	수원중부서	합의 이행
4	권고	장애청소년 보호조 치 미흡 경찰 (04진인1589)	정신지체장애인 피의자 수사과정 에서 제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않은 피진정인들 에 대하여 “경고 주의조치 및 자 체직원교육 실시” 권고	2004.10.11	서울지방경 찰청 강동경 찰서 장	수용
		계 4 건				

마. 법령정책제도 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연번	조치분	검토과제명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의결일자	권고기관	이행현황
1	의견표명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차치권 확보	2002. 5.10	보건복지부	수용
2	의견표명	강릉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 명확히 할 것을 권고	2002. 7.20.	강릉시청	수용
3	의견표명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와 재취득 제한 규정, 초보운전자특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2003. 4.15.	경찰청	수용
4	권고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차별시정권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1에 근거한 <채용신체검사>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에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2003.10.2 2	행정자치부	수용
5	의견표명	장애인고용촉진및고용개발에관한법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에 해당 분야의 자격이 검증된 전문인력을 포함시키도록 권고	2004. 4.19	노동부	수용
6	권고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 권고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한 상법조항 제732조 삭제(법무부), 보험업법과 '화재물손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재보험가입법)의 개정(재정경제부장관), 장애인관련 공동계약심사기준개선과 개별보험사의 불합리한 기준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행할 것을 위하여 아울러 차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법령 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소관부처들의 개선사안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국무총리에게 권고함	2005. 8.22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무총리	검토중
7	권고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정책·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함.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소재 2개 정신병원 등에 대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 등을 권고함	2005. 9.28	행정자치부	수용
		계 7 건				

바. 장애 및 병력관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번	과 제 명	실태조사기간	연구기관	담당부서	비고
1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노동시장 차별을 중심으로	'02.7.29-12.24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연 구소	인권정책 국 인권연구	
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2 8.1-12.24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인권정책 국 인권연구	
3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02. 10.1-12.30	법무법인지 평	인권정책 국 인권연구	
4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고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02. 10.1-12.30	이화여자대 학교 아시아여성 학센터	차별조사 국 조사2과	
5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02. 10.1-12.31	한국재활복 지대학	인권정책 국 인권연구	
6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실태조사	'02. 10.1-12.3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차별조사 국	
7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정책계획수 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03.12.16-'04.6.1 5	한국재활복 지대학	인권정책 국 인권연구	
8	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	'04. 10. 13 ~ ' 12.27	한림대학교	차별조사1과	
9	장애인 시설생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05.8.5~12.20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인권연구	
10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2006년도 예정		차별시정본 부 장애차별팀	
11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중심으로)	2006년도 예정		차별시정본 부 장애차별팀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김 상 훈 변호사

1. 장애인관련 입법의 근거

가. 헌법상 근거

- (1) 국가 존립의 근거, 국가 책무의 목표를 규정한 헌법 제10조¹⁾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 (2)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 비독립적 사유에 의하여 전인격적 영역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됨을 선언하였다(헌법 제11조)²⁾.
- (3)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권 규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³⁾, 장애인의 교육권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헌법 제31조 제1, 2항)⁴⁾⁵⁾,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헌법

1)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4)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헌법 제31조 제2항[교육을 받을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15조)⁶⁾,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⁷⁾가 이념적 전제로 원용될 수 있겠다.

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은 국가에 시민(장애인)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직접적 금지규범, 통제규범, 판단규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 권리(도출)規範이 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 (2) 헌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⁸⁾ 신체장애자에 대한 法律에 의한 보호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⁹⁾, 국가(특히 입법자)의 법률형성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
- (3) 국민(장애인)의 구체적·실질적 생활 영역에서 권리(訴求力 + 強制力)는 위와 같은 헌법이 授權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비로서 구체화되고 형성되므로, 개별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담아야 하는가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다. 장애인 관련법률

- (1) 장애인복지법¹⁰⁾은 장애인의 ① 정의 및 등록, ② 장애인 기본시책의 강구(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선거권, 주택보급 등), ③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사용자동차 지원, 장애인보조견 지원, 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고용촉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④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규제, ⑤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책, 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장애인 관련

6)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7)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8) 헌법 제34조 제1항[사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9)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구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법률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 (2)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¹¹⁾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한 이용 및 편의 보장을 규정하고, ②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¹²⁾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통사업자 등의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 (3) 특수교육진흥법¹³⁾은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선정·취학, 순회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보호자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의 방향과 지침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 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¹⁴⁾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자영업장애인 지원, 장애인근로자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이를 위한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를 위한 기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을 규정하고, ②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¹⁵⁾은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에 대한 창업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및 기업활동을 지원·보장하는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보완장치 I (각론적 검토)¹⁶⁾

- 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록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3)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발행하였는 바, 위 권고안에

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0조)은 각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동법 시행령은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제3조, 제11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제12조)을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2)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주거 및 근린생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편의시설간 연계성이 미비하며, 편의시설 설치의무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편의시설간 연계성 확보하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하철역 승강기 및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 (3)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반교통의 방해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확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관련

- (1)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법 제5조), 동법 시행령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5조),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 (2)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설기관에 의한 장애인 조기교육은 경제력이 약

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 등의 인권 현황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 현황 및 그 대안 역시 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점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한 장애인 가정의 교육비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장애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마련,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 인력의 배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개발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 자립생활 보장

-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제2장),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지급의무 등을(제3장),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4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제5장)을 각 규정하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기업에 관한 창업지원, 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차별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경영컨설팅, 우선허가제의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3.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보완장치Ⅱ(총론적 대안)

가. 파편적 장애인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 (1) 현재 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 ②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영역에 관하여, ③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분야에 관하여,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고용 및 기업활동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제정목적 제한아래서 장애인 차별에 관한 통제가 규율되고 있다.
- (2) 현행 소위 4대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가 있겠지만, ① 장애인의 배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통제를 망라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 ② 위 개별법들은 권리구제 절차가 분명하지 않거나 유효적절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법률안(의안번호 2690)

(1) 노회찬 의원 등 37인¹⁷⁾의 국회의원이 2005. 9. 16.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005. 9. 29. 회부, 2006. 4. 4.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법률안(이하 위 법률안)은 위와 같은 현행 장애인 관련법의 파편적 체계를 극복하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차별 통제 및 권리구제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평가된다.

(2) 위 법률안은 총칙(제1장), 차별금지(제2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제3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제4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제5장), 벌칙(제6장)의 총 6장 85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특이한 점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 법률안은 그 규율대상을 확정할 때 개념인 ‘장애’를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의 원인과 중점을 신체적·정신적 기능손상보다¹⁸⁾, 사회의 포괄적 장벽에 두고 있다(위 법률안 제2조 제1호).

② 위 법률안은 ‘차별’의 개념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함으로써¹⁹⁾,

17) 발의자 명단은 노회찬, 이병석, 김학원, 신국환, 손봉숙, 고조흥, 박찬숙, 장영달, 장향숙, 정화원, 이운성, 김낙성, 이호웅, 박진, 이계경, 양승조, 나경원, 최순영, 우제향, 배일도, 안민석, 김재경, 안택수, 김태년, 이진구, 홍문표, 이인제, 안영근, 엄호성, 심상정, 천영세, 단병호, 이영순, 현애자,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의원(총 37인)이다.

18) 위 법률안의 장애인 개념은, 현재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손상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9) 제2조(정의) 4.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서 배제되어야 할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소극적 한정). 특히 위 법률안은 차별의 제2유형으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의 형식상 기준이 아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명정하였다(위 법률안 제2조 제4호 제나.목).

- ③ 위 법률안은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수준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적극적 특정).
- ④ 위 법률안은 제2장(차별금지)에서, 총 14개 영역(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에 있어서 개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 ⑤ 위 법률안은 이중 소수자로서 거듭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 장애兒童에 관한 차별금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안 제3장, 제26조 내지 제29조).
- ⑥ 위 법률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사권(제57조), 조정권(제61조), 긴급구제조치 요구권(제62조), 시정권고권(제63조), 시정명령권(제64조), 고발 및 징계권고권(제67조)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위 법률안 제4장, 제30조 내지 제75조).

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나.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다.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 ⑦ 위 법률안은 악의에 의한 차별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고(제76조 제2항),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하며(제76조 제3항), 원고는 차별행위의 존재만을 입증하고, 오히려 피고가 차별행위의 부존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제77조),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추정 또는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위 법률안 제5장, 제76조 내지 제77조).
- ⑧ 위 법률안은 장애인차별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제78조) 및 이행강제금(제8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위 법률안은 현행 4대 장애인 관련법에 비해, 장애인, 차별행위, 정당한 편의, 차별행위 금지대상의 각 범위가 통일적, 망라적이고, 각 수준이 고양되어 있다는 점,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인차별위원회의, 그 권한의 규정이 분명하다는 점, 손해배상 체계에 있어 특칙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선진 입법으로 평가된다.
- (4) 현행 4대 장애인 관련법은 사회보장을 위한 급부행정의 근거가 되고 있고, 위 법률안은 각 영역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수준의 상향평준화를 꾀하는 것으로, 현행 4대 장애인 관련법과 위 법률안의 적용영역과 관심대상은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안과 현행 4대 장애인 관련법은,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다른 차원의 입법으로서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끝.

※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참고자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나.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다.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6. “적극적 조치”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7.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산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8. “교육 책임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9. “의사소통”이라 함은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항의 정보 및 재활보조공학을 이용한 화면 확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언어, 비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정보통신 및 재활보조공학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활동을 말한다.
 12.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을 창작·생산하고 향유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13. “문화·예술 사업자”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14.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 활동을 말한다.
 15.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6. “장애인체육지도자”라 함은 체육지도자로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가정”이라 함은 취사, 취침 등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2인 이상으로 이

루어진 생활공동체를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18.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9.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 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0.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1.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2. “폭력”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차별 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5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서비스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개인 및 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④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7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된 장애인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채용·승진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도구의 개발 및 지원, 시험기간의 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후에 사용자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표기구의 건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

여 사용자·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적절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4.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5.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6.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7.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8.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적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0조(차별금지) ①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 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 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 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 자료, 자막, 큰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기관 및 그의 지휘·관리·감독 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당해 교육 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12조(차별금지) ①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13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건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자가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의 개발, 연구,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자동차의 구입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⑤장애인등은 대중교통이용 및 자가운전이 어려울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상응한 비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은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등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14조(차별금지) ①한국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②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속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3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⑦정보통신제품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막, 음성, 수화, 점자, 촉각, 큰 문자, 빛 등의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개발·보급의 의무가 있다.

⑨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 도서관, 그 밖에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차별금지) ①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장애인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구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

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8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그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제20조(참정권)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절 모·부성권

제21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만을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 정책 및 활동보조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도구의 개발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산후조리기관, 입양기관 등이 장애인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절 성

제22조(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 가정, 시설의 구성원은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등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피임기구, 성향유공간, 보조기구 및 성교육 교재·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포함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절 가족·가정·시설

제23조(차별금지) ① 가정·가족 및 시설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인격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만을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이나 가족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를 제한 또는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가정 및 시설 내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13절 건강권

제24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적 판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험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료 체계의 적용 및 의학연구에 있어서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자신이 시행하는 건강과 관련한 모든 교육 과정에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원 등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그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 보조기구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집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건강을 대상으로 한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집행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절 폭력

제25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등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개선 및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의료적·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1절 장애여성

제26조(차별금지) ①장애여성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여성은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조건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 탁아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수유 보조 및 방법의 지원
2. 자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밖에 장애여성 근로자가 사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항

④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간의 장애 유무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른 각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재화와 용역의 제공자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 과정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무시, 희롱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장애아동

제28조(차별금지) ①장애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장애아동은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장애아동은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무리한 재활 치료 및 훈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관습, 사상, 종교적 태도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격이 보장되고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그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 등 보호자가 적절한 정보, 위탁,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1절 설립 및 운영

제30조(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각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두되,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5.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 차별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장애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8.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9. 그 밖에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 차별금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장애인 및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3인 이상은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장애인 및 인권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2. 장애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직에 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

⑥위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 결원의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8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9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서명·날인) 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자문기구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조사와 구제 등

제47조(정책 및 관행의 개선,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48조(장애인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장애인 인권 및 차별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 및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장애인 인권 및 차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장애인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장애인 인권자료실은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장애인 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장애인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장애인 인권 상황, 차별 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진정) ①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이 조에서는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

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8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 사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조정) ①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④제2항의 조

정이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피진정인은 조정서의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조정서에 따른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피진정인이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조정 절차 및 조정서 이행의 보고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긴급구제 조치의 요구)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3. 차별행위의 중지
4.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차별임을 결정하고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의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제2항의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 관하여는 제7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 제61조제2항 또는 제63조제6항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7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0조(처리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공개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3절 보칙

제7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7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악의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차별행위를 고의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한다.

제77조(입증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78조(차별행위) ①장애인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한다.

②이 법에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의 성격상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79조(업무방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80조(자격사칭)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비밀누설)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82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73조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5조(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6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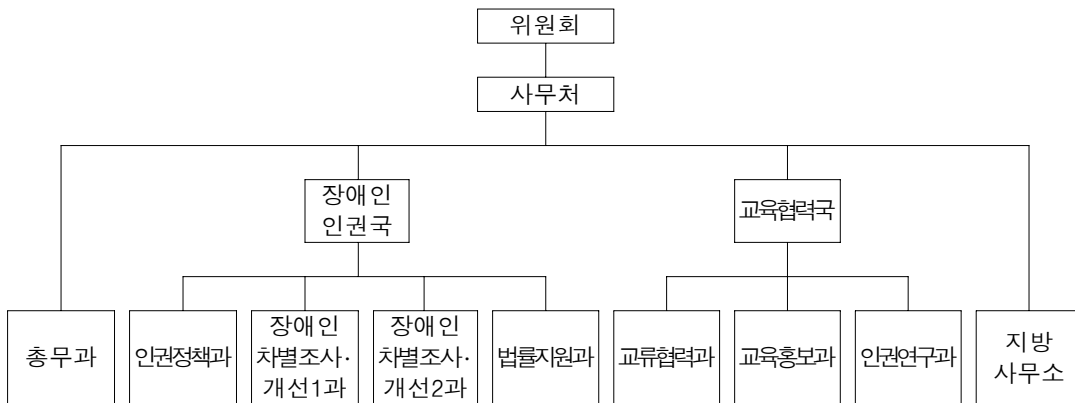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예상조직

1) 예상조직도



* 임의로 구성한 조직임. 지방사무소는 우선 3개소로 가정. 이후 단계적 확대.

○ 위원회는 1사무처, 2국, 8과, 3지방사무소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75명으로 예상.

2) 예상인원

	직 급								합 계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위원회	1	4							5
사무처장			1						1
총무과					1	1	1	6	9
인권정책과				1	1	1	2	3	8
차별조사시정 1과					1	1	2	3	7
차별조사시정 2과					1	1	2	3	7
법률지원과					1	1	2	1	5
교류협력과				1	1	1	2	3	8
인권교육·홍보과					1	1	1	3	6
인권연구과					1	1	2	2	6
지방사무소						3	3	6	12
합 계	1	4	1	2	8	12	17	30	75

* 지방사무소는 순차적으로 개소한다고 보고 최초 3개지역에만 설치.

2. 예산내역

1) 인건비

○ 장관급 위원회 평균 1인당 인건비인 4,470만원(2005년)을 적용.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인원 중 10명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 옮겨온다고 가정함.(장애인 차별을 조사하는 차별조사1과 7명, 기타 3명)

따라서 인건비는 65명×4470만원=29억 550만원임.

2) 사무소 설치비용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치한 을지로 부근에 설치한다고 가정함. 기존의 인권위원회 인원대비 차별금지위원회비율은 대략 34%임. 이것을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구함. 총 20억 3,700만원이 필요함.

- 중앙본부 임차료 및 관리비: 10억 2천만원 (국가인권위원회 1/3수준)

- 지방사무소 임차료 및 관리비: 4천 3백만원 (각사무소면적 50평기준)×3=1억 2천 9백만원

- 자산취득비용: 신설조직의 경우 물품구입에 보통 1인당 1천2백만원 소요.

74명×1,200만원=8억 8천 8백만원

3)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로 국가인권위원회(32억원)의 34%수준인 10억 8천만원이 필요함.

4) 사업비

○ 장애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 · 구제, 장애인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국내외 협조체제 강화 등에 18억 3천만원이 필요함.

3. 연도별 소요예산

○ 2006년 78억 5천만원이며, 향후 5년간 388억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단위: 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인건비	290,550	307,983	326,462	346,050	366,813	1,637,857
사무소						
임차료등	114,900	118,347	121,897	125,554	129,321	610,020
설치비용						
자산취득비용	88,800					88,800
경상운영비	108,000	111,240	114,577	118,015	121,555	573,387
사업비	183,000	188,490	194,145	199,969	205,968	971,572
합 계	785,250	726,060	757,081	789,588	823,657	3,881,636

주) 1.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6%로 가정.

2. 매년 임차료, 경상운영비, 사업비 인상률을 3%로 가정.

메 모

Empty memo box for notes.

장애인을 이동하게 하라

김용목(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일등광주와 복지광주

무등산에 가 보라! 산길을 오르고 숲 속을 거닐면서 나무들과 바위들을 본다. 크고 작고, 낮고 높고, 밋밋하고 평퍼짐하고, 꼬이고 반듯해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모여 숲이 되고, 산을 만들고, 자연을 이룬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남들을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리다'고 보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서 조화를 창출해 낸다. 위대한 예술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차이와 속도로 인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가 지향하는 1등광주 1등시민의 외침도 장애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조사한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2005년 평가 10위에서 2006년 6위로 상승한 지역으로 총점을 포함한 6개 영역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²⁰⁾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등록인구비 4.62로 전국 평균이상이고 재정자립도도 56.6%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한다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인구비가 높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 도지역을 감안하면 잘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안전영역이 전국 1위인 지역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며, 보건, 소득 및 경제활동, 복지 및 재활서비스, 문화·여가영역은 상위권인 지역이다. 그러나 정보접근, 권익보호, 교육,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 등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시청홈페이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은 전국 최하위이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교육영역의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담임배치, 통합교육 기회확대, 직업담당교사 배치율의 확대, 고등부 졸업 장애학생의 전이를 위한 노력, 지방분권 및 장애인복지행정영역의 장애인복지행정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활성화,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6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2006.

총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확대, 장애인복지정책 결정의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 비례대표제 도입과 장애인공무원의 개방형 임용 확대, 보건 및 의료의 재활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소득 및 경제활동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예산확대,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영역의 특별운송비율의 확대, 공동주택 특별분양 확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지도 강화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총점	안전	보건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복지및재 활서비스	교통및 주택	권익보호	문화·여가	정보접근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
43.45 (6)	6.39 (1)	7.08 (2)	3.15 (11)	5.51 (5)	8.15 (3)	3.56 (7)	3 (12)	5.07 (3)	0.44 (15)	1.1 (10)

* ()안의 숫자는 전국 순위임

2. 이동의 권리

장애인 문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이동권), 주거권 등 영역별로 흔히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구체적 삶은 이렇게 분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구조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서로 연관되고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즉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이동권)의 문제는 구체적 제도 속에서 분명히 독립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례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문제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 역시 능력과 효율성이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 ‘자본주의적 노동’ 속에서 교육에서의 배제가 가져오는 학력의 문제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의 문제를 자본측에서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과 복합적 위상 속에서도, 이동권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사람이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지체3급), 고재영 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씨는 사망하고 고재영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황급히 유족에게 1억 7천 만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거금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내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 지역에서도 2001년 8월 광주장애인이동권연대가 조직되면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에 저항하여 다양한 권리문제를 제기하였다. 2004년 광주장애인인권연대가 만들어지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장애인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2005년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장애인과 대중교통수단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4.59%로 전국의 장애인은 214만 9천명이며, 그 가운데 35%는 일상생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55.2%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²¹⁾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35.6%), 외출시 동반자 부재(27.8%), 기타(22.6%),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4.0%)의 순이며,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0.2%로 가장 많으며, 일반버스 26.9%, 도보 19.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라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중교통수단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광주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21)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06.

지하철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다. 지상에서 매표소까지, 매표소에서 다시 승강장까지 가는 동선이 복잡하고 승강기의 경우 전동스쿠터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다.

따라서 지하철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하철역에 수직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을 설치하되, 가급적이면 의자를 함께 설치하여 평소에는 노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동행인을 위한 좌석으로 사용하되,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가 탑승할 경우에만 의자를 젖혀서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휠체어 고정장치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하여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개찰구를 정비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개찰구를 정비해야 한다.

<표>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

구 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비 고
합 계	60대	87대	1대	
1구간 소계	35대	53대	1대	
101 (소 태)	3대	6대	1대	
102 (증심사입구)	2대	3대		
103 (남 광 주)	2대	6대		
104 (도 청)	5대	10대		
105 (금남로 4가)	2대	8대		
106 (금남로 5가)	3대	4대		
107 (양 동 시 장)	2대	0대		
108 (돌 고 개)	3대	2대		
109 (농 성)	5대	4대		
110 (화 정)	2대	2대		
111 (쌍 촌)	2대	0대		
112 (호남대입구)	2대	0대		
113 (시 청)	2대	8대		
2구간 계	25대	34대		
2구간 소계	18대	28대		
114 (서 창)	5대	8대		
115 (공 향)	5대	7대		
116 (송정공원)	4대	6대		
117 (송 정 리)	4대	7대		
TK-2구간 소계	7대	6대		
118 (도 산)	5대	4대		
119 (평 동)	2대	2대		

현재 광주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

버스, 공항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버스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버스는 단 12대 뿐이다.

버스들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태워주지도 않으며,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공항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사용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가야하며, 버스에 오르고 탈 때마다 낯선 사람에게 업혀야 한다.

목발을 사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버스를 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버스의 계단은 목발이 미끄러워지기 쉽고, 제 자리에 정착하지 않는 버스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쫓아가기에는 너무 빠르다. 버스를 탄다고 해도 휠체어 사용자들은 통로에 앉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을 할 때마다 앞으로 쏠리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버스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첫째,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low floor bus)와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가 있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만 편리하며, 노인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5-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우리 나라의 버스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한다면, 승하차를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대기할 수가 없다. 반면에 저상버스의 경우 간단하게 램프만 나오면 되므로 승하차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가 있고, 계단이 없어서 장애인, 노인, 유모차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일반 장애인, 노약자 좌석으로 사용하다가 휠체어 사용자가 오면 의자를 젖히고 공간을 마련하여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셋째, 보도를 정비해야 한다. 보도의 높이가 일괄적이 되어야 저상버스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넷째, 버스 정류소에 장애인 정차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이 탑승을 원할 경우 장애인 정차 표시를 한 곳에서 기다리면 되며, 저상버스의 기사 는 장애인을 보고 그곳에 정확하게 정차를 해주면 된다. 저상버스에서 램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보도 옆에 정착을 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지금처럼 버스 정류소에 적당히 정차를 하다가, 장애인이 정차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정차를 해줌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 광주광역시 저상버스 도입계획

(단위 : 대, 억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차량	2	10	10	10	10	10	10	10	10	8	90

4.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ation Service : STS)의 일환인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심부름 센터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에게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들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비하여 예산도 적게 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내버스 등의 경우 민영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나 휠체어리프트장착 버스로 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특별교통수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만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광주 시내의 시내버스는 모두 933대에 이른다. 900여대가 운행하면서 거미줄 처럼 엮어 있는 노선들은 몇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감당할 수는 없다. 셔틀버스는 예산과 운행 체계상 일정한 지역만을 운행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용지점도 장애인들이 자주 간다고 판단되는 복지관, 병원, 구청, 백화점과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번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2시간만에 한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다시 1-2시간을 걸려서 가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심부름센터 역시 장애인들이 전화로 예약을 하면 유료로 외출을 할 수 있지만, 이용하기 할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그나마 예약이 밀려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출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약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출이란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부름 센터의 경우 반드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므로 계획되지 않은 외출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편도 또는 왕복으로 예약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 여러 곳을 들러야 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과 승용차

만으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이 결코 대중교통수단을 대치할 수 없으며, 특별교통수단만으로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장애인도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대중교통의 이용만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5. we will ride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버스이다.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버스가 보다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며,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하철의 경우 편의시설을 완전히 설치하고 시설 정비를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른다. 예산의 문제와 구조상의 문제점이다. 특히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양동역의 경우 역사의 구조상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역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곡선 구간이 많은 노선의 경우 곡선 구간은 자연스럽게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게 되며, 또한 전동차 바퀴의 마모 등에 의해 전동차와 승강장의 단차 역시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의 경우 완전하게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비하기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지하철이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책의 대중교통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택시 역시 한계가 있다. 택시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 문제이다. 호주처럼 장애인들에게 택시 요금 할인 쿠폰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기에 비용 문제는 온전히 개인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혼자 힘으로 택시로 옮겨 타고, 다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 때마다 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택시를 타기 싫게 만드는 요소이다.

결국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은 버스일 수밖에 없다. 물론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영이 아닌 민영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점, 저상버스의 비용이 비싸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점²²⁾, 현재처럼 교통이 혼잡하여 버스가 운행시간에 쫓기므로 장애인등의 탑승을 위해 오랜 시간 정차할 수 없는 점, 같은 정류소를 함께 사용하는 버스가 많아 정확한 위치에 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야말로 장애인의 이동문제,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버스 정류소는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현재 광주시내에 설치된 지하철역사는 11개에 이른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도 933대의 버스가 광주 시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정류소는 지하철 역보다 집에서 혹은 출발장소나 도착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버스는 수직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를 타기 위해 수직 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역처럼 깊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없이 보도에서 바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승하차를 위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상버스만 도입이 된다면, 장애인은 보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셋째, 버스는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가 적다.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인도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면 된다. 보도의 높이가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와 상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도 보도의 높이를 15cm 정도로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15cm 정도면 횡단보도 턱낮추기에서 연석경사로의 경사도를 낮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며, 저상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높이를 갖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우선 버스에 널링시스템(kneeling system : 버스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임)을 도입하고 버스에서 경사로(ramp)가 나온다면, 적어도 8분의 1 정도의 경사도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노인들 역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며, 어린이와 유모차 역시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된 지하철역의

22) 광주광역시의 경우 저상버스 1대당 국비 4천5백만원, 시비 4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우 노인, 어린이, 유모차,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지하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도 지하철이 완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버스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상버스 1대 가격을 2억 원 미만이다.²³⁾ 만약 대량 생산으로 저상버스 가격을 보다 낮춰서 1억5천만 원 정도로만 버스 가격을 낮추어 광주 시내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면 장애인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이다. 장애인 역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중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외출을 못하고 이동이 적은 것은 이동을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논리이다.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권리는 편의증진법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근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접근권에 의하면 “장애인등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⁴⁾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²⁵⁾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²⁶⁾ 장애인 역시 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23)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저상버스 1대 가격을 약 1억8천1백만원에, 현대자동차는 약 1억8천8백만원에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량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를 말한다.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접근권을 위배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해지는 문제이다. 만약 광주시민들에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고, 시립장애인복지관만 가는 셔틀버스만으로 외출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그것도 편도와 왕복만 예약이 되는 심부름 센터의 승용차 서비스만 이용해서 외출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일반 시민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장애인들에게는 통한다고 보는가? 장애인이 외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당연한가?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2013년까지 90대(10% 미만) 도입만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도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에 수립한 저상버스를 도입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2013년이 되도 시내버스의 10% 미만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발을 묶어 두고,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가두어 두겠다는 말이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동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데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난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내버스 뿐 아니라 공항버스,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난관은 해결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이다.

1.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2. 시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 정순임

1. 시작하는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제가 중학생일 때 사회시간 때 선진국의 복지를 이야기 하며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체제의 근원적인 책임에 대한 의미로 평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 장애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다 원하는 사회가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조국의 현실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정해지게 되는데, 장애인의 삶의 질은 훨씬 더 직결되어져 장애인 개인의 운명적 삶으로 규정 됩니다. 이제 장애인에게도 평생 주기별 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독일 장애인 시설 “”오베베“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가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베베“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의 절반쯤 되는 지역에서 6개의 장애인 작업장, 슈퍼마켓, 여가호텔, 규모가 큰 주(건)시설 3곳, 개별주거 40여 곳, 외부 그룹 홈 4곳을 관리, 정신지체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애 전반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은 독일에서는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우선 조기교육을 받고, 유치원에 들어가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는다. 그리고 나면 통합학교나 장애유형별 특수학교에 들어가 18세까지 학교교육을 받고, 그 다음엔 작업장이나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중증장애우의 경우엔 주간보호를 받는다. 또, 30대가 되면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는 순회주거, 위탁가정, 생활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대부분 퇴직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노인그룹에 속해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주로 40세부터 장애가 심화되는데, 노인그룹에 속하면 일 년에 1만440유로(약 1천305만원)가 지원 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케어를 받게 된다.

2. 광주지역 장애 학생 현황

광주지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공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은 5개의 유치원에 17명의유치원생이 있으며, 초등학교는 89개 특수학급 441명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25개 특수학급 175명의 재학생, 고등학교는 14개 105명의 재학생, 총 721명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5개 특수학교 유치부 30명, 초등부 367명, 중등부 224명, 고등부 244명, 총 96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공과에 56명이다.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는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학생수가 더 많으나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1/2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통합교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장애인 교육차별 현황

1) 장애 학생의 교육 수혜율 저조

- 장애학생 4명 중 단 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 율이 62.5%(추정 특수교육대상자 9만 3천여 명 중 5만8천여 명)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4%(추정 장애학생 23만여 명 중 5만8천여 명)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을 종합하면, 전체 장애학생 중 최소 37.5%에서 최대 74.6%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이는 5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대비 취학률이 93% 이상인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2) 특수학급 부족

- 특수학급 설치 율이 학교·급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 설치 율은 뒤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과정에 통합된 장애학생이 중등 이상 과정에서 특수학교로 복귀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함. 실제 특수학교의 경우 초등과정 에 비해 중학부 및 고등부 과정의 학생 수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단 1%에 불과함. 유치원 과정의 경우 사실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환경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 교 부족 현상은 장애학생의 근거리 지역 통학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 설치 교에 취학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을 통학하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3) 열악한 교육 지원 환경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장애학생들에게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로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치료교육 담당 교원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배치 기준 및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최근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2만 1천여 명)에 비해 공급(2천 5백여 명)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 통학 지원 체계(통학버스의 운영, 통학 보조원의 지원, 통학비의 지급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든 부담을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특히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율이 50% 미만임), 학교에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 학교 졸업 후에 대한 전환교육 지원(직업교육, 자립생활교육, 진로교육 등)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학교 졸업 후 60% 이상의 장애학생이 가정 또는 시설 등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계 미 확립

- 전국의 67개 대학에 1700여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수험편의, 수업편의, 학교생활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40% 이상이 중도 탈락 또는 휴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애인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정도(학력)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력 소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장애인 교육 지원법

1) 제안 이유

-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은 제

정이라,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과 1차례(1994년도)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개정 작업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 특히, 1994년의 전면 개정안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이 법안에 반영되었고,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특수교육을 질적 측면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일궈내기도 하였음
- 하지만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특수교육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 왔음.
- 전면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의 목적인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하여,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특수교육의 현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많은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허구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수 십 년 동안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2)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존 법률과의 비교표

구분	(기존)특수교육진흥법	(제정안)장애인의교육지원에 관한법률
법률의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의 위험이 예견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정도·장애유형·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수혜 대상의 범위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장애인교육지원(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필요한 사람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만 교육지원	영유아기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 명시
교육지원의 내용	특수교육(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을 제공	특수교육, (영역별)치료교육, 전환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 보조인력,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기숙사 등)
대상자 선정 절차	보호자의 신청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보호자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이 선정(진단평가)의뢰 → 교육감이 직권으로 진단평가 회부 → 전문가에 의한 진단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 통보
교육장면의 배치	교육장면의 배치 순서만 언급(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순회교육 순으로 배치)	배치의 원칙 제시 -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 - 가장 근거리 지역의 교육기관
학급 설치 기준	시행령에 위임(시행령에는 1인 이상 12인 이하의 경우 1학급 설치 규정)	법률상에 규정, 설치 기준 강화(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설치 기준 차등화)
교사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임(학급당 1인의 특수교육교사 배치 및 6학급당 1인의 순회치료교육교사 배치, 직업교육교사의 배치 기준은 없음)	법률상에 규정, 배치 기준 강화(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차등화 하여 명시)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운영	명칭을 전문 과정으로 변경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에도 전문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위원 구성을 명시하지 않음)를 구성하여 연간 단위의 개별화교육 작성 의무 규정. 학교장이 관리, 감독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조정자 배치 의무화. 개별화교육계획 문서를 법적 문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별도의 교육 서비스 전달 기구	제시하지 않음	중앙 및 시군구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보호자의 권리 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보장(1심제의 심사청구 절차)	선정, 배치 및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불복사항이 있을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항 제시(2심제의 심사청구 절차 규정)

5.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일지

- 3월 13일 : 장애아동의 부모 150여명과 장애인당사자 50여명, 대학생 1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접거농성에 돌입.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진행
- 3월 16일 : 단식 4일차. 윤종술 대표 외 지역 부모회 대표가 ‘장애아동의 보육비 삭감과 여성가족부의 협소한 장애아동 보육지원 계획’에 대한 여성가족부 항의 방문. 오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의 연구사들과 면담 진행.
- 3월 19일 : 단식농성 7일차. 경기·인천·대구·울산·충남 부모회에서 상경. 부모님들과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교양 진행. 저녁에는 청계천 거리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거리 선전전’ 진행
- 3월 20일 : 단식농성 8일차. 대구대학교 BK21연구단 주최의 월요세미나에서 특수교육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세미나를 진행
- 3월 21일 : 단식농성 9일차.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함
- 3월 22일 : 단식농성 10일차. 민주노동당 김혜경 전 대표를 비롯, 심재옥 서울시의원 등이 농성장 방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지역 장애인부모회에서 방문. 서울시청 앞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
- 3월 23일 : 단식농성 11일차. 오전 11시 ‘장애인교육차별 사례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접수 기자회견’ 진행. 전국 10개 지역으로부터 181건의 차별사례를 접수받아 이중 6건의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오후에는 경남교육청의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이 농성장 방문하여 요구 사항 경청.
- 3월 26일 : 단식농성 14일차.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여 투쟁 결의 발언. 결의대회 후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연대 결합. 저녁에는 ‘최옥란 열사 4주기 열사 추모제’ 참여
- 3월 28일 : 단식농성 16일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 장애인교

육권연대도 결합. 오후에는 농성장을 방문한 부모단체를 대상으로 부모조직 강화에 대한 교육 진행

- 3월 29일 : 단식농성 17일차. 제6회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아 진행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결의대회에 결합.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하여 181건의 차별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할 것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받음. 오후에는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방문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 3월 30일 : 단식농성 18일차.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부모 결의대회’를 진행. 전국 12개 시도지역에서 1200명의 장애아동의 부모가 참여하여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염원하는 삼보일배 시위를 진행.
- 4월 2일 : 전국 치료특수교육과 교수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간담회” 진행
- 4월 3일 : 단식농성 22일차,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4월 5일 : 단식농성 24일차,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공개.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준) 주최로 부산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간담회”개최
- 4월 6일 : 단식농성 25일차, 단식농성 참가 학부모 김동해씨(경남장애인부모회)가 장기간의 단식으로 인한 탈수증상 등으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
- 4월 7일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지방 교육지원 국장, 특수교육정책과장 등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 내용을 경청한 후, 추후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변하고 돌아감
- 4월 8일 : 전국 12개 시도지역에서 상경한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교육주체 총력 투쟁 결의대회” 개최
- 4월 13일 : 한나라당 김정권의원 및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위원장 지지 방문
- 4월 14일 :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최종공청회 개최
- 4월 14일 : 단식농성 요구안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장관 면담
- 5월 8일 : 최순영의원, 229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6. 광주 장애인교육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장애인 교육 차별철폐단’의 합의문

교육감님과 합의문을 작성 한 날인 7월 28일 이후 8월 19일 합의문에 따른 논의 및 예산책정을 위해 각 특수학교 교장단과 함께 만난 것을 시작으로 방과후 등에 예산 편성으로 3차례, 방과후 특기적성으로 5차례를 만나 논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 교육감님을 뵙고 교육청에서 ‘06년에 실행 하시는 상황을 논의 하고자 시 교육청 교육감님 면담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28일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초등교육과장 장학관, 장학사, 총무부 실무자를 만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실시할 예정인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 1) 2006년 3월 동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동·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교사와 특수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도록 한다.
 - ‘06년 3월 동부교육청의 지원센터 개소, 지원센터 배치인력은 각 2명으로 치료 특수교사 1명씩 배치되어 서부교육청 - 2명, 동부 교육청 - 1명(인턴 장학사1명)
- 2) 본청에는 2006년 3월 중등특수교육 업무담당 전문직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동·서부교육청에 초·중등특수교육업무담당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06. 3 중등 특수 업무 담당 전문직 1명(중등 교육과 내)에 초.중등 특수교육 업무전담이 아닌 담당전문직은 본래 있었으며 교육부 정원 증원은 확대가 없어 인원증원은 할 수 없었다.(중등 특수교육 전담자 올 5월 공채)
- 3) 2006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적용한다.(초등 5개 증설, 중등 1개 증설)
 - ① ‘06. 3 특수학급 6. 6. 7. 12 시설 고려 ② 특수학교 6. 10. 12. 12 시설 고려
- 4)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치료교육 담당 인력을 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2006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교사 1명씩을 배치하며, 법 개정 이후에는 전원 배치한다. 특수학급 중·고등부 직업교사 배치는 2006년부터 법 규정과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배치한다.

- ① 지원센터-치료교사 3명 배치 ② 특수학급 직업교사-교육부 배치 기준 (정원) 의거하여 배치
- 5) 특수학급 운영비는 학교표준운영비 1% 이상 확보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시책사업으로 시달한다.
- 특수학급당 300만원이상(교재 교구비 100만원 따로 지원)
- 6)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수요자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배치한다.
- 전국 2500명 특수교육 보조원 '06년도 신규는 7명으로, 총 59명
 - ① 공익-본청 14, 동부 12, ⇒ 계 40명 순차적 배치
 - ② 보조원 확대의 필요성 속에서 자활에서 활동하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원활한 학교배치를 위한 노력 요구
 - 처우 개선 : 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연봉제)
 - 고용안정
 - 업무 보조 등의 잡무문제
 - 교육연수 실시
- 7) 공립 특수학교(급)에는 특수교육전공자를 배치하고, 사립특수학교에는 무자격 교사를 해소하도록 지도한다.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하도록 지도
- 8)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차량을 증차하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 5개 특수학교 통학버스 차량 증차,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 교통비 지원 - 본 예산 2000여만원 추경 5000만원 확보
 - 특수학급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부모 버스비 기준 1일 2회, 학생 : 초·중등 버스비 기준
- 9) 낙후된 특수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1/2 교실을 정규 교실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 ①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교육부) ② 특수학교 교실 증축 등 서류 제출(교육부)

- 10) 특수학교(급) 방과후 교육은 2006년부터 특수학교(급) 초등부부터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부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방과후 교육 실시를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① 초등학교 특수학급-1명이라도 자체 운영 지원을 위해(99학급 55만원) 지원
 - ② 특수학교 초등부-학급 수(48학급 60만원)대로 지원
 - ③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교육부) 준수
- 11) 성인 장애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 교육부의 국고보조 사업 제외됨 ⇒ 본예산에서 누락(시청에 요구 제안)
- 12) 특수학교(급) 교사를 대상으로 삼고, 성교육 지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본청 체육보건교육과 '06학년도 성 예방교육 운영계획에 의해 실시한다는 답변에 대해 교사대상 성교육 연수실시, 연2회 연수 및 장애학생 성교육 실시 요구
- 13) 차기 위원회부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교육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위원 위촉-관계자의 의견을 참고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특수학교 967명, 통합학급 647명에 대한 형평성 속에서 통합 관련 담당자 특수교육 위원회 위원 요구
- 14) 장애청소년 및 성인이 시교육청 산하의 교육문화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장애 청소년 교육문화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광주 학생 교육 문화회관 ⇒ 장애학생 관련 프로그램 신청 시 적극 협조(유료) 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광주 교육 문화회관 편의시설 확충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의 수련시설 편의시설 확충 1박2일등의 자립 활동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 15) 특수교육대상자가 원하는 공립 유·초·중·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

록하고, 사립 유·초·중·고 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14개 신설, 초등 9개, 중등 2개, 고등 3개)

16)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보급한다.

○ 교육연수원-교원 관련 연수 과정에 1~2시간 필수 이수

17) 각 급 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개선해 나간다.

○ 교육부-복권 기금 ⇒ 편의시설(홍보)에 대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공동실시, 로또 복권 기금으로 개선을 요구

2005년 7월 28일

김원본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정순임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대표

심재의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7. 2006년 광주지역 초등특수학교 · 학급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운영계획안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사교육비경감 및 제7차 교육과정 중 열린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장애학생에게도 교육기회의 평등권이 주어져야한다는 판단 속에서 장애학생부모, 특수교육담당선생님, 장애관련 단체들이 장애학생들 에게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3년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5년도부터 서울, 경남, 경북, 울산이 실시하였고, 광주에서도 지난해 본 단체와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인천, 대전, 충남에서도 각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

습니다.

장애학생특기적성활동은 장애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고, 또한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며, 장애학부모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2) 방과 후 목적

- 다양한 문화, 기회제공을 통한 적성개발, 취미여가활동신장
- 방과 후 활동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치료교육 활동기회제공
- 학교 내 장애인교육의 평등권 확대에 기여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내 장애학생 교육 환경확산

3) 방과 후 내용

- 체육활동(수영, 태권, 태권도, 체능 활동: 축구, 농구, 줄넘기, 체조등)
- 문화활동(풍물, 피아노, 바이올린, 전래놀이, 도예등)
- 인지 교육활동(주산, 과학 활동, 바둑, 컴퓨터등)
- 치료교육(언어, 음악, 물리치료) 등 적성교육, 치료교육활동, 학교전통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 및 문화예술분야의 부서 등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4) 운영방법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의 희망과 조건에 알맞은 부서를 편성하여 운영(학교 방과 후 담당 교사, 특수반 교사, 장애학생부모가 함께 논의하여 비 장애 방과 후 운영과 같이 강좌개설)

- 각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방과 후 특기적성 개설
- 특수학교 초등부 학급 수만큼 방과후 특기적성 개설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기관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5) 대상

- 특수학교 초등부 및 초등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및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방과 후 특기적성 운영>**1. 예산****1) 결정된 예산**

- 특수학교 초등부 학급 수:51학급 학생 수:367명 1학급 평균수 7명
- 특수학급 수: 85학급 학생 수: 384명 평균수:4,5명

① 특수학교 초등부 : 60만원 * 10개월

② 초등학교 특수학급 : 55만원 * 10개월

총 예산 : 8억 2천만원 본예산 : 4억 1천만원 추경예산 : 4억 1천만원

※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을 공교육 제도 실시라는 속에서 학교에서 전면 실시를 강조하여 1명이라도 있는 학급은 예산지급 요구, 예산편성

2) 예산책정 진행 과정 :

- ① 8월 19일 각 특수학교 교장 단, 철폐 단 대표들이 모여 합의안에 따른 논의 및 예산책정 과정에서 특기적성 방과 후 예산책정을 철폐 단에게 제안
- ② 8월 29일 초등교육과 과장님, 특수 교육담당 장학사와 논의, 특수학교 초등 학급은 1학급당 60만원,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1학급 55만원으로 예산 올리기로 결정
- ③ 11월 17일 본예산에 4억 1천만원에 방과 후 예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철폐 단 교육청 방문(추경예산으로 4억 1천만원 책정된 것 확인 및 기획 관리국장과 면담을 통하여 총 8억 2천만원 예산 확정)

2.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논의**1) 교육청 안****가. 초등학교 특수학급 특기적성**

- ① 특수학급 3명 이상의 경우 강사가 학교내 특기적성 실시(3명 이상 특수학급에서 3명은 학교 내 특기적성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밖을 원할 때 학교내 특기적성 개설 및 수강료 지원)
- ② 특수학급 1-2명이거나 학교내 활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수강료 지원(년 10개월, 5만원 이내), 단 특수교사 등이 관내 학원수준 등 파악하여 안내
- ③ 일반 특기적성분야 희망자는 학교운영비로 지원
- ④ 방과후 학교 운영 제외(송우, 일곡)
- ⑤ 강사 월50만원, 운영비 월5만원으로 학교측과 협의(종목, 시기, 주당횟수, 강사채용, 내용)

나. 특수학교 초등부 특기적성

- ① 초등부 학급별 특기적성교육 실시
- ② 특수학교는 정도도 조금 심하고 인원도 많으므로 강사료 월60만원, 운영비 월5만원 지원
- ③ 대학 자원봉사 이용시는 강사료 월 30만원 정도 지원
- ④ 실시 방법은 학교측과 협의(초등 오전 수업실시일 등 고려 : 정상적인 통학 버스 운영)
- ⑤ 방과후 학교 운영은 계속함

2) 장애인 교육 차별철폐단 안

가. 특수학급

- ① 방과 후 특기적성을 원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수와 상관없이 강좌 개설
- ② 학생수가 1~2명인 특수학급에 55만원의 지원이 어려울 시 지역 내 강좌 개설하여 특기적성 실시(차량 지원 필수)
- ③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을 원하지 않고 지역 내 강좌에 참석 하고자 하는 학생(부모님이 원하는 강좌를 진행하는 기관에 직접 데리고 간다)

나. 특수학교

- ①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급수를 제외한 학급의 수만큼 학교 내 강좌 개설
- ② 수업후 방과후 특기적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 ③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을 원하지 않고 지역 내 강좌에 참석 하고자 하는 학생(부모님이 원하는 강좌를 진행하는 기관에 직접 데리고 간다)

다. 소요되는 예산

- ① 월소요 예산 총 7,200만원
 - 특수학급 60학급 * 55만원 = 3,300만원
 - 특수학교 40학급 * 60만원 = 2,400만원
 - 지역강좌 20강좌 * 60만원 = 1,200만원
 - 차량지원비 20강좌 * 20만원 = 400만원
- ② 년 소요 예산
 - 10개월 기준 7억 2천만원
 - 8개월 기준 5억 7천600만원

라. 10개월에 부족한 개월(3월, 8월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 열린 학교

마. 방과 후 특기적성을 원활한 운영 및 체계를 위하여 방과 후 특기적성 협의체를 구성

- ① 학교 내 특기적성 방과 후 진행을 위한 논의
- ② 강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법 논의
- ③ 지역 내 기관의 강좌 개설 등을 논의한다.

3) 교육청과 논의되어진 진행상황

<1월 26일>

- 가. 교육청에서 실시한 특기적성 기초조사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설문지 공동제작 배포를 통한 부모님 요구 파악
- 나. 기초조사를 통한 자료 속에서 교육청에서는 사설 치료 기관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는 수강료 지원, 본 단체는 공교육의 입장 속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을 이용한 강좌개설 요구
- 다. 특수학급 교사들의 특기적성에 관한 연수 시 참여하여 자세한 설명요구

<2월13일>

- 가. 교육청 설문지에 대한 문제제기 (본 단체가 초안 작성하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설문지 안 중 비 장애학생 특기적성 방과후를 지원 방법에 포함 한 것에 대하여 -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3명 이상 원하여야 특수학급에 55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이 이야기 하는데 3명 있는 학교에서 한명이 비 장애학생 방과후에 참석하여 제외시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비 장애학생 특기적성 방과후에 참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2명의 학생에 대한 권리의 문제에 이의 제기하여 설문지에 제외
- 나. 특수학교(급) 형평성의 문제 제기
 - 지원방법의 동일성 요구(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도 치료센터 등에 많이 다니는데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하지 않고 학교 밖을 원할 때 특수학급만 학교밖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 심각한 문제 발생 제기
 - 교육청은 특수학급만 학교 운영비 지원 및 수강료나 지역강좌 개설
 - 2.14 초등 특수학급 교사 교육청 연수 실시 시 대표 참여
 - 설문지 학교에 부모님 모여 실시

<2월 28일> 교육청

교육감 면담 요구 속에서 교육국장님등과 합의한 진행 과정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방법 및 지원액 결정

- ① 초등학교 특수학급-1명이라도 자체 운영 지원을 위해(99학급 55만원) 지원
- ② 특수학교 초등부-학급 수(48학급 60만원)대로 지원
- ③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교육부) 준수

<3월7일> 3시 교육청에서 특기적성 강사에 대한 재논의

· 방과후 특기적성에 관하여 논의

- ① 강사 인력 풀, 지역기관 풀 제를 위한 협의체 제안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자체적으로 풀 제를 만들겠다고 함(교육청 특기적성 강사 인력 풀 페이지에 강사 개별로 등재 또는 장애 특기적성 강사 인력 풀 홈 페이지 재차 요구). 한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 구할 때 강사가 학교에 신청, 지역 개설 가능 기관을 발굴하여 기관 활용을 위해 특기적성 기관 풀 제 실시
- ② 올바르게, 원활한 특기적성을 위한, 부모 설명회 실시를 위한 교육청 기관 제공 및 협조 공문 요청(할 수 없다는 답변)

<3월 13일> 교육청 관계자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행한 논의사항

- ① 방과후 특기적성 실제적 운영자인 교육청에 대한 예우로 16일 예정인 부모 설명회 취소
- ② 부모설명회 대신 부모님들께 드릴 가정통신문 공동제작하기로 함
 - 예산, 교장·교사·학부모가 함께 논의하여 프로그램 강사 선정
 -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의 노력도 문안에 적기로 함
 - 학교 내 지역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
 - 모든 초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방과후 실시
- ③ 지속적으로 인력 풀 개발
그 이후에도 3월 23일 방과후 학교 지침에 대한 논의 실시

<전국적인 방과후 특기적성 진행상황>

지역	실시년도	대상
서울	2005년~	특수학교 초등부 및 초등학교 특수학급
	2006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 전체 (고 - 07년부터)
울산	2005년~2006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고 전체
경북	2005~2006년	특수학급 초,중 전체
경남	2004년2학기~2006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고 전체
대전	2006년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고 전체
대구	2005년~2006년	특수학급 초,중,고 전체
인천	2006년부터	특수학교 초등부, 초등학교 특수학급
충북	2006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전체
부산	2006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방안에 대하여

주 속 자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갖으며 자립생활에 대한 성공과 실패까지도 장애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잃었던 장애인의 인권을 다시 찾는 인권회복 운동이며, 기존의 장애인복지인 수혜와동정의 대상에서 당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한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사회 참여를 이루는 것이다.

1. 자립생활의 개념

오늘날까지 장애인은 재활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비장애인을 목표로 기능 회복 중심의 훈련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훈련의 성과는 재활훈련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의 출현과 함께 2차 장애의 발생 및 사회적 환경 변수,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재활훈련의 성과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 관련 기관과 복지 정책은 재활 패러다임(Paradigm)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이념을 논함에 있어 그 원리와 가치를 확인하는 일부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에 대한 정의는 수십의 정의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학술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liver(1991:87-93)는 “Independent Living”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설명하면서 “자립적”이라는 표현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의미에서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과 자조적(self-help, Self-supporting)이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즉 기능적, 심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거나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의존적이라고 말하고 기능적 손상이나 심리적 장애의 극복과정 또는 자신감의 회복과정을 자립과정 또는 Independent Liv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기능 손상이 현존할 지라도 자의(自意)에 의한 회복과정이 이루어지면 Independent Living으로 보았다.

일본의 자립생활 지도자 中西(Nakanishi, 2000)씨는自立生活의 정의에 대하여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일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에서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中西씨는 장애인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일지라도 본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NCIL(전미국장애인자립생활협회,2000)은 Independent Living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Independent Livin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Independent Living”이라 함은 기능적 자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스스로 정하여 생활하는 능력이며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이며 자신의 삶을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최소화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여 일상생활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라고 설명하고 있다(Independent Living Glossary,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p.206-207, 1988).

또한 DeJong(1979)의 정의에 의하면, 위험을 동반하는 존엄, 그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실패할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하여 장애인은 실로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며, 인생의 삶에 대하여는 증인이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Cole(1979)은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즉, 사회활동과 가족부양, 지역사회생활의 희락과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삶의 참여과정이다.

호주의 저명한 학자 Laurie(1979)은 “Independent Living이라 함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 사는 권리이며 자신의 생활 형식(일과, 음식, 오락, 선행, 악행, 실수, 모험)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즉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의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권을 최대한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생활로 볼 수 있고 호주나 일본의 경우는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을 동반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자신이 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Independent Living이란 기존의 신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의 의미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여지는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논할 것이다. (정종화 2004 장애인자립생활이념과 실천방향)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① **동료 상담(Peer Counseling)** : 동료상담의 핵심적 기능은 경험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천할 수 있는 기량을 얻게 된다.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장애인에게 경험은 최고의 재활전문가의 조언보다도 더 강력한 조정적 힘을 갖게 된다. 동료상담은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할 수 있고, 자립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자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도록 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지원 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개호서비스의 목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개호서비스는 자원봉사 서비스와는 달리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결정한다.

③ **교통편의 제공(Transportation)** :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일종의 이동서비스이다.

④ **자립생활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 실질적이며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기술 훈련으로, 동료교육(Peer approach)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에 얻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개호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등이다.

⑤ **정보제공과 의뢰(Information/Referral)** : 장애인들이 직접서비스 외에도 각종 결정, 자원 활용,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의뢰지원자립생활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인이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서비스다. 정보제공과 의뢰는 다른 서비스 기관과 지역사회에도 제공되어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나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자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⑥ **권익옹호(Advocacy)** : 권익옹호 서비스는 자립생활 서비스를 이전의 지역사회 중심의 기본프로그램이나 기관들과의 확연한 차이로 인식된다.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주도하고 선택권으로 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의존적인 규범을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로서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면 대신 서포트 해주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등에 개소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 지지, 지원해 주는 것)

⑦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 자립생활을 달성함에 있어 주택 관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 등 제공한다.

⑧ **보장구 임대 및 수리(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각종 재활기구의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⑨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 연금, 의료보호 등 각종 제도의 수혜에 대한 일종의 정보 제공으로 정기적인 정보의 신속한 갱신(Updating)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정종화 2002)

3. 지역사회 자립생활 현실화 요건

장애인 자립생활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현실화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원리와 철학을 장애인 당사자, 부모, 전문가, 행정가, 정책관련 행정공무원,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게 알리는 홍보 및 교육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도 잘 알 수 있다. 똑같은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도 II의 이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설문지 결과와 그렇지 않고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를 잘 아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먼저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념을 먼저 알리고 실천하게 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의 이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애인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자립생활의 대표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소규모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즉, 성공적인 자립생활 모델이 지역에서 많이 출현하여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장애인들이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의 실천 파ioni아를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 고가의 전동휠체어나 침대 등의 임대 또는 급여지원, 지역의 가용자원의 활용 등이 필수적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

분에 있어서도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고 특히, 전동휠체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급을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보장구 임대센터가 정비되지 않은 것이 과제 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립생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기초생계급여가 보장되듯 기초연금제도나 장애인 수당제도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 장애수당이 반드시 지급되고 일본의 경우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공영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용이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방안

첫째, 생계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은 생존권의 범위를 넘어 생활권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소득보장 외에 활동보조서비스의 권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장

자립생활은 생계보장 수준에서 생활보장 수준으로 운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일본(타인개호부조)이나 미국(메디케어와 메디케이트)처럼 국가에 의한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법적(권리로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연금과 장애수당 등의 지급의 추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기초생계보장 수준에서는 자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고 있고 장애수당도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생계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는 기초연금이 도입 되어야한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15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장애수당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여야한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하여 자립생활지원에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법을 제정(활동보조서비스포함)하고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장애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장애인복지법개정은 장향숙의원,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9월중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자립생활지원법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보건복지부 T/F 팀구성 논의예정이며,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사례는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안이 6월 2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제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 되어야 장애인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주택개조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문제는 자립생활 장애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현재 주택구조는 턱을 없애고 경사로 설치등 보수공사를 지원해야한다

주택을 지을 때부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장애인,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한 디자인)이 되면 굳이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에서 베리어프리(barrier free)를 외치지 않아도 된다.

주택뿐만이 아니라 거리의 턱 제거 문제나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지역의 도로계획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대표가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넷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소규모지역(인구5만-10만)에 한개 정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대변자역할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임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료상담사의 가정방문이나 장애인의 역량강화, 지역주민의식 강화, 권리옹호 등 중증 장애인들 접근이 편리한 곳에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자립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에 취업하여 일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고 방문하는 그 자체가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센터의 직원이 되어 장애인의 직업군이 창출되고 비장애인계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직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자립생활보장의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단계적으로 생활시설 축소하고 자립생활지원 확대해야 한다

생활시설에 대한 현황, 예산의 투입, 흐름,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통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보강등 생활시설을 늘리는데 쓰이고 있는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으로 돌리면 추가 예산 확충 없이도 자립생활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질랜드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시설자체가 없다고 한다.

선진국의 사례나 시설운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설축소, 자립생활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단계적으로 자립생활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희망한다.

※참고자료 : 정종화(2005,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카페

광주광역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보육 등을 말한다) 전반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 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33조 별표 4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 지원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이 지급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를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센터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항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6. 5. 17.

발 의 자 : 장항숙 · 김태년 · 김춘진
유승희 · 황우여 · 신중식
강기정 · 김덕규 · 김우남
김영주 · 구논희 · 정청래
오제세 · 박기춘 · 문학진
박상돈 · 노현송 · 심재덕
의원(18인)

○ 제안이유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법 또한 이러한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나.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함(안 제27조).
- 마. 정부는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시·군·구장애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8조).
- 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규정 함(안 제49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1조).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인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지원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후(死後)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

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별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장애인의 날) 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18조(장애발생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료·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적응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에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편의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대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 때문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의 보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일정비율이상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의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그 밖에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이하 “정책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정책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정책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31조(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시·군·구장애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 두는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에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제34조(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료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녀교육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

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건표지(이하 “보조건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장애인보조건 전문훈련기관의 지정, 보조건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0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장애인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자립훈련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생산품의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목, 물량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3조(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4조(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의 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48조(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활동보조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동료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52조(자립생활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시설운영의 개시 등)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 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 조치
4. 그 밖에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제58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장애인단체협의회) ①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0조(장애인보조기구 등) ①“장애인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

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1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장애인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제64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②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 ③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국가시험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9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자격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1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2조(수수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73조(비용의 부담)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비용의 수납) ①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6조(압류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77조(조세의 감면 등)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에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8조(심사청구)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7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6.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7.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자
2.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 또는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운영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障 碍 人 福 祉 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5. 12. 27.

발 의 자 : 정화원 · 이한구 · 진수희 박찬숙 · 황진하
고조홍 · 공성진 · 이상득 · 나경원 문 희
엄호성 · 이계진 · 유승민 · 박세환 · 권철현
이인기 · 안명옥 · 김희정 · 이병석 · 안상수
박계동 정병국 · 권영세 · 신상진 의원(24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왔으며,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이러한 장애인복지수요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접근의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신적 장애의 정의를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하고, 정신지체 또는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지적 장애로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조제6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

- 시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의제2항, 안 제22조2의제3항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
 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 마.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
 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8
 조제1항).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
 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
 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
 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함(안 제48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5. 12. . 발의될 장애인기본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이 처리
 될 것을 전제로 성안된 법률안이므로 위원회 등에서 심사·처리시에 장애인기본
 법안과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의 자립”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을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직업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를 “정신적 질환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보호”를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을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보호 등 평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행하도록 활동보조인 파견 등”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재활보조기구”를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정보에의접근”을 “정보접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기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聽

覺障礙人을 위한 手話 또는 폐쇄자막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장애인 을 위한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우리말녹음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聽覺障礙人을 위한 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며 민간 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手話通譯을 하도록”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을 “점자 도서관 등의 시설물 확충과 점자 및 음성 도서 등의 출판물 보급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 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⑦국가는 영상물사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우리말녹음 등을 방영 또는 상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 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5年마다 실시한다”를 “3年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애 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등)”을“(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障碍類型別 재활서비스 제공등”을“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여성장애인의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사업,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활동보조비의 지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이하“활동보조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보조비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중“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발급절차등에”를“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로 한다.

④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하여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임을 이유로 그 주거지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再活의 研究)”를“(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障碍人再活의”를“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로,“직업재활등에”를“직업재활·자립생활기술 등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福祉施設 및 團體”를 “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47조 중 “年齡”을 “성, 연령”으로, “종별”을 “유형”으로 하며,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障礙人이 기능회복과 향상을”을 “생활지도, 재활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활동보조인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이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립생활지원시설 :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급활동보조서비스 연계 및 알선, 취업 및 기술교육,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제51조제1항 중 “소관업무에”를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에”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不法行爲”를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團體의 보호·육성”을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은 신설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을 위하여 추진 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관리· 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 제목 “障礙人福祉團體協議會”를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신설한다.

①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지방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

2. 장애인지도자의 연수와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장애인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6. 장애인 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7. 장애인복지를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8. 지방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및 지방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및 지방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및 협의회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再活補助機具”를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55조 중 “再活補助機具”를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再活補助機具”를 “보조공학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再活補助機具”를 각각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再活補助機具”를 “보조공학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再活補助機具”를 각각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再活補助機具業體”를 “보조공학기구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再活補助機具”를 각각 “보조공학기구”, “再活補助機具業體”를 “보조공학기구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再活補助機具業體”를 “보조공학기구업체”로, “再活補助機具業體중”을 “보조공학기구업체 중”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再活補助機具”를 “보조공학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再活補助機具”를 각각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제62조 중 “점역사등 障礙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礙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 중 “第34條第1項”을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7조 중 “300萬원”을 “1000萬원”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한 자

제80조 중 “200萬원”을 “300萬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제3호는 삭제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자”로 한다.

- ②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활보조기구”를 “보조공학기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條(目的) 이 법은 障礙人의 인간다운 삶과 權利 保障을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障礙發生의 예방과 障礙人의 의료, 敎育,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障礙人福祉對策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障礙人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礙人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礙人의 福祉增進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障礙人의 定義) ①障礙人은 신체적·정신적 障礙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p> <p>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障礙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礙人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障礙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礙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정신적 障礙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礙를 말한다. <p><신 설></p> <p>第5條(障礙人 및 家族의 義務) ①障礙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社會·經濟活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障礙人의 가족은 障礙人의 자립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第6條(重症障礙人의 보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障礙人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7條(保護者에 대한 配慮) 國家와 地方自治</p>	<p>第1條(目的) ----- -----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p> <p>第2條(障礙人의 定義) ①-----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일상생활·직업생활-----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정신적 질환으로----- -----. 3. 지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말한다. <삭 제></p> <p>第6條(重症障礙人의 보호 및 지원) ----- -----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보호 등 평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행하도록 활동보조인 파견 등-----.</p> <p><삭 제></p>

團體는 障礙人의 福祉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礙人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障礙人을 보호하는 者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死後에 障礙人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第11條(障礙人福祉調整委員會) ①障礙人福祉綜合政策을 수립하고 關係部處間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政策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障礙人福祉政策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障礙人福祉增進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障礙人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障礙人福祉에 관한 關聯部處의 협조사항
6. 기타 障礙人福祉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關係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第12條(障礙人의 날) ①國民의 障礙人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障礙人의 재활의욕을 고취

<삭 제>

<삭 제>

<삭 제>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障 碍 人 的 날로 하고 障 碍 人 的 날부터 1주간을 障 碍 人 週 間으로 한다.

②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障 碍 人 的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6條(醫 療 · 再 活 治 療)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障 碍 人 이 생 활 기 능 을 습 득 또 는 회 복 할 수 있도 록 필 요 한 기 능 치 료 · 심 리 치 료 등 재 활 의 료 를 제 공 하 고 障 碍 人 的 障 碍 를 보 완 하 기 위 하 여 재 활 보 조 기 구 의 제 공 등 필 요 한 시 책 을 강 구 하 여 야 한 다.

第20條(情 報 에 의 접 근) ①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障 碍 人 이 원 활 하 게 情 報 에 접 근 하 고 그 의 사 를 표 시 할 수 있 도 록 하 기 위 하 여 전 기 통 신 및 방 송 시 설 등 을 개 선 하 도 록 노 려 하 여 야 한 다.

②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방 송 국 의 장 등 민 간 사 업 자 에 대 하 여 뉴 스, 國 家 的 주 요 사 항 의 중 계 등 大 統 領 승 이 정 하 는 방 송 프 로 그 램 에 聽 覺 障 碍 人 을 위 한 手 話 또 는 폐 쇄 자 막 등 을 방 영 하 도 록 요 청 할 수 있 다.

③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國 家 的 인 행 사 기 타 教 育, 집 회 등 大 統 領 승 이 정 하 는 행 사 를 개 최 하 는 경 우 에 는 聽 覺 障 碍 人 을 위 한 手 話 通 譯 을 하 여 야 하 며 민 간 이 주 최 하 는 행 사 의 경 우 에 는 手 話 通 譯 을 하 도 록 요 청 할 수 있 다.

④ (생 략)

⑤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視 覺 障 碍 人 的 정 보 접 근 을 용 이 하 게 하 기 위 하 여 점 자 및 음 성 도 서 등 을 보 급 하 도 록 노 려 하 여 야 한 다.

<신 설>

<신 설>

第21條(便 宜 施 設)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障 碍 人 이 공 공 시 설 및 교 통 수 단 등 을 안 전 하 고

第16條(醫 療 · 再 活 治 療)-----

보 조 공 학 기 구 -----

第20條(情 報 접 근) ①-----

-----의 사 소 통 과 정 보 접 근 에 관 한 필 요 한 시 책 을 강 구 하 여 야 한 다.

②-----

장 애 인 을 위 한 수 화 · 폐 쇄 자 막 · 화 면 해 설 · 우 리 말 녹 음 등 을 방 영 하 도 록 요 청 하 여 야 한 다.

③-----

-----청 각 장 애 인 을 위 한 수 화 통 역 과 시 각 장 애 인 을위 한 점 자 자 료 를 제 공 하 여 야 하 며 민 간 이 주 최 하 는 행 사 의 경 우 에 는 수 화 통 역 및 점 자 자 료 를 제 공 하 도 록 -----

④ (현 행 과 같 음)

⑤-----

점 자 도 서 관 등 의 시 설 물 확 충 과 점 자 및 음 성 도 서 등 의 출 판 물 보 급 에 노 려 하 여 야 한 다.

⑥ 國 家 와 지 방 자 치 단 체 는 장 애 인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정 보 통 신 망 및 정 보 통 신 기 기 의 접 근 · 이 용 에 필 요 한 지 원 및 도 구 의 개 발 · 보 급 등 필 요 한 시 책 을 강 구 하 여 야 한 다.

⑦ 國 家 는 영 상 물 사 업 자 에 대 하 여 장 애 인 을 위 한 자 막 및 우 리 말 녹 음 등 을 방 영 또 는 상 영 하 도 록 요 청 하 여 야 한 다.

<삭 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6條(福祉研究등의 振興)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 福祉增進을 위한 研究와 障礙人 福祉振興, 障礙人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礙人 福祉研究·福祉振興·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8條(調査)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障礙人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생략)

제22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第28條(調査) ①-----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32條(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の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障碍類型別 재활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豫算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36條(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등) ① ~ ② (생 략)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

第32條(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2조의2(여성장애인의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사업,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활동보조비의 지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활동보조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보조비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36條(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하여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임을 이유로 그 주거지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승으로 정한다.
第46條(再活의 研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再活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障礙豫防·의료·敎育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第4章 福祉施設 및 團體

第47條(保護措置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의 年齡 및 障礙의 種別과 정도를 고려하여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障礙人福祉施設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障礙人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8條(障礙人福祉施設) ①障礙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략)

第51條(監督) ①障礙人福祉實施機關은 障礙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52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등) 障礙人福祉實施機關은 障礙人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

⑥---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第46條(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직업재활·자립생활기술 등에---

② (현행과 같음)

第4章 복지시설 및 단체

第47條(保護措置등) -----

-성, 연령-----유형-----

-----생활지도, 재활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활동보조인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第48條(障礙人福祉施設)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자립생활지원시설 :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급활동보조서비스 연계 및 알선, 취업 및 기술교육,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6. -----.

② (현행과 같음)

第51條(監督) ①-----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에-----

② (현행과 같음)

第52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등)

1. ~ 3. (현행과 같음)

4.-----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5.·6. (생략)

第53條(團體의 보호·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の 福祉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第54條(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 ①障碍人福祉團體의 활동지원과 障碍人の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協議會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社會福祉事業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協議會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불법행위-----

5.·6. (현행과 같음)

第53條(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條(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지방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장애인지도자의 연수와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장애인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6. 장애인 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7. 장애인복지를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8. 지방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및 지방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및 지방협의회에의 활동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第5章 再活補助機具

第55條(再活補助機具) “再活補助機具”라 함은 障 碍 人 이 障 碍 의 예 방 과 보 완 및 기 능 의 향 상 을 위 하 여 사 용 하 는 의 지·보 조 기 기 타 保 健 福 祉 部 長 官 이 정 하 는 보 장 구 와 일 상 생 활 의 편 의 증 진 을 위 하 여 사 용 하 는 생 활 용 품 을 말 한 다.

第56條(再活補助機具 品目告示등) 保 健 福 祉 部 長 官 은 再 活 補 助 機 具 의 품 질 향 상 등 을 위 하 여 再 活 補 助 機 具 의 품 목 을 고 시 할 수 있 으 며,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그 기 준·규 격 을 정 하 여 고 시 할 수 있 다.

第57條(再活補助機具의 교부등) ①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障 碍 人 의 신 청 이 있 을 때 에 는 豫 算 의 범 위 내 에 서 再 活 補 助 機 具 를 교 부·대 여 또 는 수 리 하 거 나 再 活 補 助 機 具 의 구 입 또 는 수 리 에 필 요 한 비 용 을 지 급 할 수 있 다.

②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 한 비 용 의 지 급 은 再 活 補 助 機 具 의 교 부 또 는 수 리 가 곤 란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한 한 다.

③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 한 신 청 을 할 수 있 는 者 의 범 위 와 再 活 補 助 機 具 의 교 부·대 여·수 리 및 비 용 지 급 의 기 준·방 법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保 健 福 祉 部 승 으 로 정 한 다.

第58條(再活補助機具業體의 지원·육성) ①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再 活 補 助 機 具 의 개 발·보 급 을 촉 진 하 기 위 하 여 再 活 補 助 機 具 를 생 산 하 는 업 체(이 하 “再 活 補 助 機 具 業 體”라 한 다)에 대 한 생 산 장 려 금 의 지 급·기 술 지 원 등 필 요 한 조 치 를 강 구 하 여 야 한 다.

② 國 家 와 地 方 自 治 團 體 는 再 活 補 助 機 具 業 體 의 육 성 을 위 하 여 특 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再 活 補 助 機 具 業 體 중 우 수 업 체 를 지 정 하 여 자 금 을 융 자 또 는 보 조 할 수 있 다.

③ (생략)

④ 協 의 회 는 설 립 목 적 에 지 장 이 없 는 범 위 에 서 수 익 사 업 을 할 수 있 으 며, 발 생 한 수 익 은 協 의 회 및 協 의 회 운 영 시 설 외 의 목 적 에 사 용 할 수 없 다.

⑤ 協 의 회 의 조 직 과 운 영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정 관 으 로 정 한 다.

第5章 보조공학기구

第55條(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

第56條(보조공학기구 品目告示등)-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

-----.

第57條(보조공학기구의 교부등) ①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
-----.

②-----
-----보조공학기구-----

③-----
-----보조공학기구-----

-----.

第58條(보조공학기구업체의 지원·육성) ①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업체-----

-----.

②-----보조공학기구업체-----

보조공학기구업체 중-----

③ (현행과 같음)

第59條(再活補助機具 研究開發의 지원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70條(費用의 負擔)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 第39條第1項, 第44條第1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57條第1項,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豫算의 범위 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7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第8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者

第59條(보조공학기구 研究開發의 지원등) ①

-----보조공학기구-----

---보조공학기구-----

②-----보조공학기구-----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전문 인력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第70條(費用의 負擔) -----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第77條(罰則) -----

-----1000萬원-----

--.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한 자

5. ~ 11. (현행 제2호 내지 제8호와 같음)

第80條(過怠料) ①-----

-----300萬원-----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자

<p>2. (생략)</p> <p>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조건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조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p> <p>4. ~ 7. (생략)</p> <p>② ~ ⑤ (생략)</p>	<p>2. (생략)</p> <p>3. <삭제></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